

별첨1

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

1. 지연인출 · 이체제도 [금융권 공통사항]

□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(송금·이체 등)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·이체 시 30분간 출금·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

○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

※ 다만,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·이체가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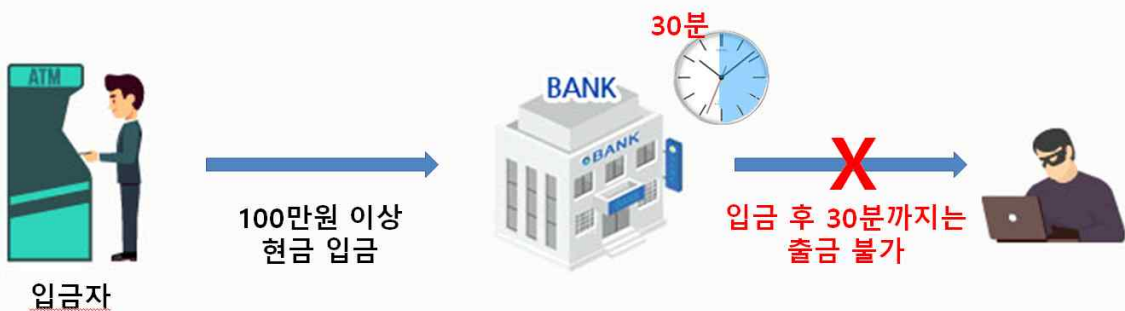
① (적용거래) 수취(입금)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·이체할 경우

② (지연방법)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·이체 지연

③ (참여기관)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요구불예금) 취급기관*

*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(증권사) 일부 등

<지연인출제도 처리 흐름>



2. 지연이체서비스 [고객 선택 사항]

□ 보이스피싱·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

※ 다만,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

- ① (신청·해지) 인터넷(스마트) banking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
- ② (이체취소)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(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) 취소 가능
- ③ (지연시간 설정)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
- ④ (즉시이체)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
 - 또한,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(최대 1백만 원)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

<지연이체서비스 처리 흐름>



3.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[고객 선택 사항]

□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,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

① (신청해지) 인터넷(스마트)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

② (대상거래) 인터넷(모바일)뱅킹·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

③ (이체한도*)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,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,

-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

*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로서, 고객이 소지한 인증수단(OTP, 보안카드)이나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